<table>
<tr><td>민원사무명</td><td colspan="5">잡지외간행물 신고</td></tr>
<tr><td>민 원 내 용</td><td colspan="5">정보간행물·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(이하 "잡지외간행물"이라 한다)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호, 종별 및 간별, 발행인의 성명 등 기본사항을 관할 구청에 신고</td></tr>
<tr><td>근 거 법 규</td><td colspan="5">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</td></tr>
<tr><td>주 관 부 서</td><td>홍보체육실</td><td>협조부서
(기 관)</td><td>지방경찰청
본적지 읍,면,구청</td><td>처 리
기 간</td><td>25일</td></tr>
<tr><td>현 장
조사사항</td><td colspan="5">없 음</td></tr>
<tr><td>업무흐름도 및
위임전결사항</td><td colspan="5">접수→ 서류검토 및 사실 확인 → 결재→ 신고증 교부</td></tr>
<tr><td>구
비
서
류</td><td colspan="5">1.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
2. 해당 정보간행물·전자간행물·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
3. 법인의 경우 : 법인의 정관 1부
4. 단체의 경우 :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
5. 단체 및 개인의 경우 : 발행소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6.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관련부서
(기 관)
협조사항</td><td colspan="2">관련부서명</td><td colspan="3">협 의 사 항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방경찰청
본적지 읍,면,구청</td><td colspan="3">범죄경력 유무 조회
신원조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후 속
이행사항</td><td>후속민원명</td><td>절 차</td><td>시 기</td><td>처리부서</td><td>조치사항</td></tr>
<tr><td>세무1과에 통보</td><td>처리 후 의뢰</td><td>처리 후 즉시</td><td>세 무 1과</td><td>세금고지</td></tr>
<tr><td>수수료 및
제반경비</td><td colspan="5">. 수수료 : 없음
. 면허세 : 18,000원</td></tr>
<tr><td>관련후속
이행사항</td><td colspan="5">없 음</td></tr>
</table>